

■ 수산업법 시행령 [별표 9]

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(제39조제1항 관련)

어업 종류	주로 포획 하는 어종	어구 사용량	어구의 규모 및 형태	비고
연안 통발	낙지	5,000개 (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발의 가로·세로·높이·지름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 2. 깔때기 모양의 그물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미만으로 한다. 3.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해서는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. 	<p>가. 낙지 외의 어종은 방류해야 한다.</p> <p>나.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자는 그 어구 외에 별표 2 제3호다목에서 정한 일반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.</p> <p>다. 포획된 낙지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에서 판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.</p>